

2022. 12. 29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29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

경제수사대장	천명철	2133-8805
환경보전수사팀장	유영애	2133-8850
담 당 자	김기성	2133-8867
	김영룡	2133-8851
관련누리집 (메뉴)	https://news.seoul.go.kr/safe/public_cop_intro	

사진있음 ■ 동영상있음 ■ 쪽수 : 6쪽

서울시,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62곳 형사입건

- 시 민사단, 겨울철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도장업체 집중단속 결과, 주택가 등 도심 구석구석에 자리잡은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무더기 적발
- 자동차 불법도장 시 배출되는 유해가스는 암 유발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
- 도장작업은 관할구청 신고 및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
※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,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(이하 민사단)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,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62곳 적발하여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 곳곳에 ‘자동차외형복원·텐트·광택’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,

-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62개 업체 중 특히 야간·주말 등 취약시간에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6곳, 노상에서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3곳이다.

- 자동차 불법 도장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(VOCs, Volatile Organic Compounds), 총탄화수소(THC, Total Hydrocarbons) 으로, 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 - 불법도장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중으로 휘발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. 또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벤젠, 톨루엔, 자일렌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.
 - 따라서 도장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하고,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대기중으로 내보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해 주어야 한다.

- 서울시 민사단 수사관들은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 단속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, 야간·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잠복하였으며, 사업장 내 쓰레기를 분석하여 위반사업장을 샅샅이 찾아내기도 하였다.
 - 단속된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취약한 야간 등 시간대를 골라 불법도장을 하거나 사업장 곳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까지 설치하여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.
 - 또한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사업장 출입문을 잠그고 도주하거나, 사장을 불러오겠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, 한 곳이 적발되면 인근 동종업체가 모두 영업을 일시 중단하여 단속에

어려움이 있었다.

- 단속 중 도장작업을 안 했다고 저항하는 경우에는 동일색깔의 페인트가 묻은 마스킹테이프*, 비닐 등의 쓰레기를 찾아내 적발하기도 했다.

* 페인트 작업을 할 때 다른 부분에 묻지 않도록 잠깐 붙여두는 테이프임.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.
- 적발된 62곳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.

〈 형사처벌 적용법 조항 〉

-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(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 -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제23조 제1항 위반)
- 자동차관리법 제79조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 -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(제53조 제1항 위반)

-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“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일상 주변에 위치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어,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.”며, “향후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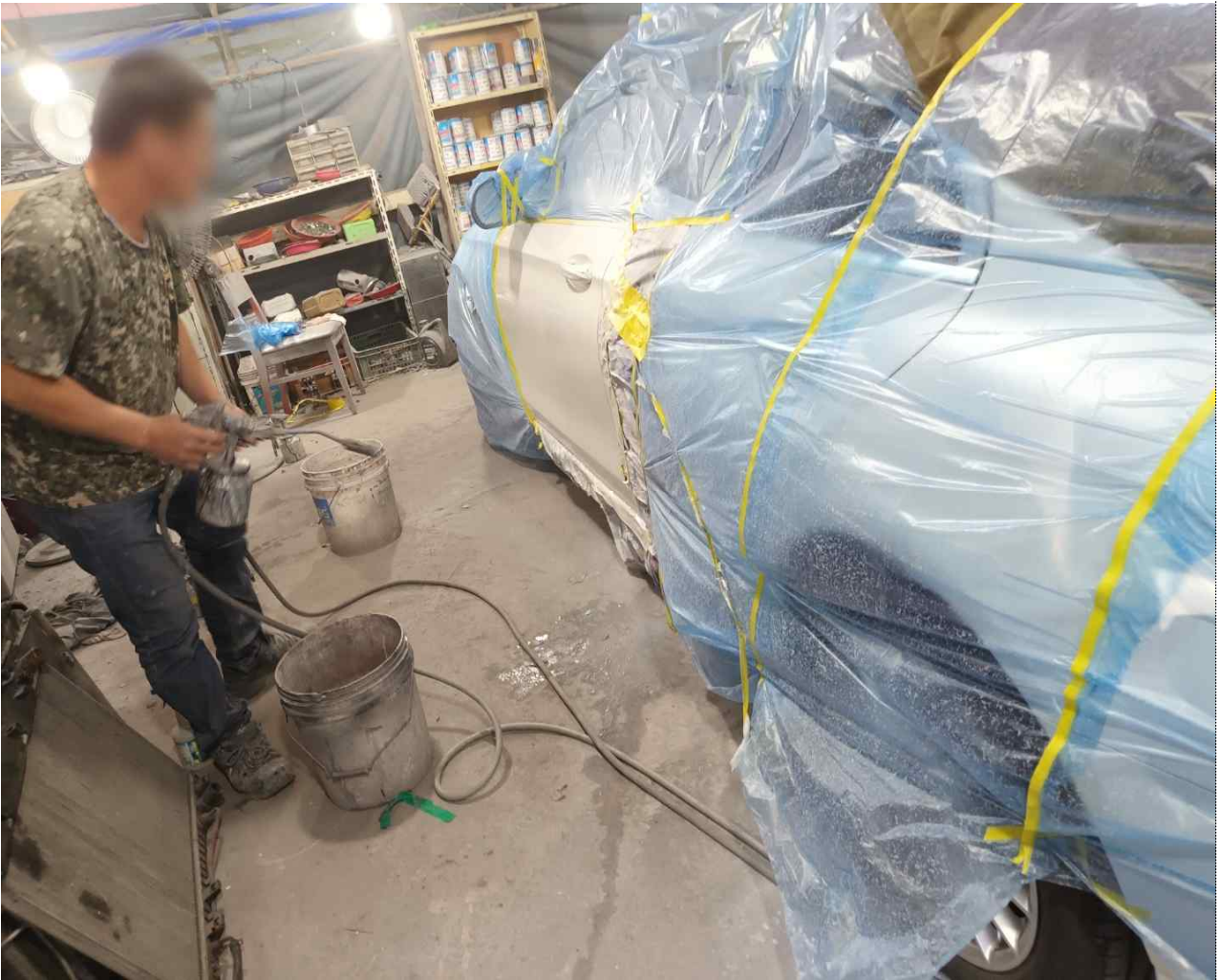
〈붙임〉

1. 위반행위 현장 사진

[붙임1]

※ 보도자료에 제공된 사진 및 동영상 인용시 상호명 및 인물 사진, 차량번호는 모자이크 처리하여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반행위 현장사진



1. 자동차 불법도장 장면

※ 보도자료에 제공된 사진 및 동영상 인용시 상호명 및 인물 사진, 차량번호는 모자이크 처리하여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반행위 현장사진



2. 야간 불법도장

※ 보도자료에 제공된 사진 및 동영상 인용시 상호명 및 인물 사진, 차량번호는 모자이크 처리하여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반행위 현장사진



3. 사업장에 설치된 단속 감시용 CCTV